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17 발의연월일: 2024. 11. 11.

발 의 자:김영진·박홍배·조 국

임호선 · 서삼석 · 김남희

정일영 · 안도걸 · 황명선

박홍근 · 임광현 · 백혜련

오기형 • 역태영 • 정준호

강유정 의원(16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없음.

그러나 국가예산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하여 해당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(안 제1조, 제16조제7호, 제27조의2, 제34조제9호의3, 제57조의3, 제68조의4,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등).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투명한"을 "투명하고 정의로운"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제2호 중 "제73조의4"를 "제73조의5"로 한다.

제1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정부는 예산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소득계층 별로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에는 소득재분배의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소득계층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3.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

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7조의3(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제65조 본문 중 "제68조의2, 제68조의3"을 "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 까지"로 한다.
- 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68조의4(소득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이 소득계층별로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소득재분배인 지 기금우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소득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소득재분배 기대효과, 성과 목표, 소득계층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③ 소득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1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6의3. 소득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
- 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 하고,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73조의4(소득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소득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소득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2, 제34조제9호의3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소득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소득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68조의4,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의 예산	제1조(목적)		
·기금·결산·성과관리 및 국			
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			
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			
지향적이며 <u>투명한</u> 재정운용과	투명하고 정의로운		
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			
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			
것을 목적으로 한다.			
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	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		
등) ①・② (생 략)	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	③		
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			
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			
한다.	<u>.</u>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<u>제73조의4</u> 에 따른 중장기 기	2. <u>제73조의5</u>		
금재정관리계획		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		
④ ~ ① (생 략)	④ ~ ① (현행과 같음)		
제16조(예산의 원칙) 정부는 예산	제16조(예산의 원칙)		
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			
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			
다.	<b>.</b>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
<신 설>

<신 설>

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제33 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-----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 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~ 9의2. (생 략)

<신 설>

10. ~ 16. (생략)

<신 설>

7. 정부는 예산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 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.

제27조의2(소득재분배인지 예산 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소득계층별로 미칠 영향을 미 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소득 재분배인지 예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에는 소득재분배의 기대효과, 성과목 표, 소득계층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~ 9의2. (현행과 같음) 9의3.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 10. ~ 16. (현행과 같음)

제57조의3(소득재분배인지 결산

제6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 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 부터 제68조까지, <u>제68조의2,</u> <u>제68조의3,</u> 제69조부터 제7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 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, 제68조제1항 전단 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신 설>

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	]
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	, <u>-</u>
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	<u>-</u>
보고서(이하 "소득재분배인지	]
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이	
<u>한다.</u>	
②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에는	<u>-</u>
집행실적, 소득재분배 효과분석	<u>}</u>
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	· •
제6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	_
	_
	_
	_
제68조의2투	_
<u>터 제68조의4까지</u>	_
	_
	_
	_
	_
	_
	_
제68조의4(소득재분배인지 기금	L I
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정부는	<u>-</u>
기금이 소득계층별로 미칠 영	]
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히	<u> </u>

제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)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 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운용계획안등"이라 한다)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. 다만,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라 학다. 다만,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있다.

1. ~ 6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"소득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	
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힌	-
<u>다.</u>	
② 소득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	
획서에는 소득재분배 기대효과	•
성과목표, 소득계층별 수혜분석	ļ
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	
③ 소득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	
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	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제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	
부서류)	-
	-
	_
	-
	-
	-
	-
	_
	-
	-
	_
<u>.</u>	
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	
6의3. 소득재분배인지 기금운용	-
계획서	

7. (생략) 7. (현행과 같음) 제73조의4(소득재분배인지 기금 <신 설> 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 금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하는 보고서(이하 "소득재분배 인지 기금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 소득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 에는 집행실적, 소득재분배 효 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 야 한다. 제73조의4(중장기 기금재정관리 제73조의5(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 등) (생 략) 계획 등) (현행 제73조의4와 같 음)